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1. 2021가합546646]



【전문】

- 【원 고】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담당변호사 안광휘 외 1인)
-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외 2인)
- 【변론종결】2022. 8. 19.

【주문】

1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1은 548,218,806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지위
-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동남개발'이었으나, 2019. 3. 17.경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였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소외 3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5.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타경6011, 이하에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2. 19.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남현대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와 같이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6. 1. 6.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8. 6. 18. 배당표가 경정되었는바, 당해세 교 부권자인 피고 용인시에게 12,012,76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각 430,366,448원, 배당요구 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18,722,3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최종 작성되었다.
- 그런데 소외 1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주식회사 금강리빙스텔개발(이하 '금강리빙스텔 개발'이라 한다)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타배316)에서 2018. 10. 23.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합계 341,538,179원, 추심채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919,143원, 압류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88,248,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또한, 소외 2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금강리빙스텔개발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867)에서 2018. 11. 30. 전부채 권자인 피고 1에게 206,680,627원, 전부채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225,163,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위 각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피고 1은 합계 548,218,806원(=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341,538,179원 + 소외 2에 대한 배당금 중 206,680,627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120,641,487원(= 118,722,344원 +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1,919,14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등

- 1) 각 처분금지가처분
- 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①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3. 8.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666)을 받았고, ② 소외 4는 2017. 5. 8.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664)을 받았으며, ③ 소외 5는 2016. 11. 21.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0852)을, 2020. 8. 1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4566)을 각받았다.
- 2) 관련 민사소송
- 가) 관련 제1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6. 12. 26. 원고를 상대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1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6. 관련 제1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 지방법원 2016가단804721, 2018가단508843(공동소송참가)]. 관련 제1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1 소송에서의 피고)는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1. 23.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는 제1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3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3에게 제3 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피고 한화저축은행의 위 소 중 제3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중 제1 부동산에 관한 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나) 관련 제2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2. 22.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2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14., 소외 5는 2019. 4. 17. 관련 제2 소송에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8가단510181(공동소송참가), 2019가단519437(공동소송참가)]. 관련 제2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2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5. 15.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 (이유로,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소외 5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항소심에서 각각하되었다).

다) 관련 제3 소송

- 소외 4는 2017. 4. 19.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 합527617, 이하 '관련 제3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 그러나 2019. 9. 26.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2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고, 2020. 7. 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190), 2020. 12. 10. 상고 기각(대법원 2020다257739)되어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관련 제4 소송

- 소외 5는 2019. 11. 20.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8569, 이하 '관련 제4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 그러나 2020. 7. 2.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3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소외 4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또는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2017. 12. 27.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84)되었다.
- 그러나 소외 1, 소외 2는 2018. 12. 13.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노37), 2019. 8. 30. 상고 기각(대법원 2019도5386)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중 원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법인의 악의 유무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2015. 2. 5.경부터 2015. 11. 12.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은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지위
- 원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동남개발'이었으나, 2019. 3. 17.경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동남리빙스텔개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2015년경 용인시 처인구 ○○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고,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50% 지분권자였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보에이치디(이하 '삼보에이치디'라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소외 3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 소외 2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마쳐져 있던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5.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수원지방법원 2015타경6011, 이하에서는 위 임의경매 신청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2. 19.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동남현대는 같은 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 '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와 같이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라. 피고들의 배당금 수령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2016. 1. 6.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이하 '피고 한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2018. 6. 18. 배당표가 경정되었는바, 당해세 교 부권자인 피고 용인시에게 12,012,760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인 소외 1, 소외 2에게 각 430,366,448원, 배당요구 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18,722,3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최종 작성되었다.
- 그런데 소외 1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주식회사 금강리빙스텔개발(이하 '금강리빙스텔 개발'이라 한다)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타배316)에서 2018. 10. 23. 전부채권자인 피고 1에게 합계 341,538,179원, 추심채권자인 피고 한화저축은행에게 1,919,143원, 압류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88,248,42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또한, 소외 2의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서는 피고 1, 한화저축은행과 금강리빙스텔개발의 각 채권압류가 경합되어 2018. 6. 21.경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8타배867)에서 2018. 11. 30. 전부채 권자인 피고 1에게 206,680,627원, 전부채권자인 금강리빙스텔개발에게 225,163,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위 각 배당표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피고 1은 합계 548,218,806원(=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341,538,179원 + 소외 2에 대한 배당금 중 206,680,627원), 피고 용인시는 12,012,760원,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120,641,487원(= 118,722,344원 + 소외 1에 대한 배당금 중 1,919,143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관련 민사소송 등

1) 각 처분금지가처분

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①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3. 8.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0666)을 받았고, ② 소외 4는 2017. 5. 8. 이 사건 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1664)을 받았으며, ③ 소외 5는 2016. 11. 21.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0852)을, 2020. 8. 1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2020카단504566)을 각받았다.

2) 관련 민사소송

가) 관련 제1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6. 12. 26. 원고를 상대로 제1, 3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1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6. 관련 제1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 지방법원 2016가단804721, 2018가단508843(공동소송참가)]. 관련 제1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1 소송에서의 피고)는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1. 23.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는 제1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3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3에게 제3 부동산에 관하여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피고 한화저축은행의 위 소 중 제3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 중 제1 부동산에 관한 신청은 항소심에서 각 각하되었다).

나) 관련 제2 소송

피고 한화저축은행은 2017. 2. 22.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하 '관련 제2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4는 2018. 3. 14., 소외 5는 2019. 4. 17. 관련 제2 소송에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6567, 2018가단510181(공동소송참가), 2019가단519437(공동소송참가)]. 관련 제2 소송에서 원고(관련 제2 소송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5. 15.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순차로 마쳐진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은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다만 소외 5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1심에서, 소외 4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항소심에서 각각하되었다).

다) 관련 제3 소송

소외 4는 2017. 4. 19.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고, 생보부동산신탁, 원고, 동남현대,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1 부동산에 관한 후행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7가 합527617, 이하 '관련 제3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러나 2019. 9. 26.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2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도 각하되었고, 2020. 7. 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190), 2020. 12. 10. 상고 기각(대법원 2020다257739)되어 202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관련 제4 소송
- 소외 5는 2019. 11. 20. 원고를 상대로 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8569, 이하 '관련 제4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 그러나 2020. 7. 2. '소송물이 동일한 채권자대위소송인 관련 제3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바.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 소외 1, 소외 2는 소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소외 4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또는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2017. 12. 27.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 제기(수원지방법원 2017고합784)되었다.
- 그러나 소외 1, 소외 2는 2018. 12. 13.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4. 12.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노37), 2019. 8. 30. 상고 기각(대법원 2019도5386)되어 같은 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 중 원고를 피해자로 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별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소멸하였다.
 - 그렇다면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는 무효이다.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7.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11. 12. 매각대금 1,000,000,000원을 완납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외 2, 소외 1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지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법인의 악의 유무는 법인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입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입한 매각대금 1,00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게 된 2015. 2. 5.경부터 2015. 11. 12.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당시 원고와 피고인 소외 2, 소외 1은 사실상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납입한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은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